NOROO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이 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것임)

MSDS번호 : AA10001-1000000983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가. 제품명 : CC 4 Z7650
○ 용도분류 : 유성 페인트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권고용도 : 칼라강판 도장용 BASE 도료
○ 사용상의 제한 : 권고 용도외 사용 제한

다. 제조사/공급자/유통업자 정보
○ 회사명 : (주)노루코일코팅
○ 주소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장흥로39번길 54
○ 정보제공 및 긴급연락처 : 054-278-0277 기술2팀 한승훈

2. 유해 위험성

가. 유해 위험성 분류
인화성액체(flammable liquids) 구분 3
급성독성(acute toxicity) 경피 구분4 (ATEMIX :1978.96<= 2000)
급성독성(acute toxicity) 흡입 구분4(증기) (ATEMIX :11.005<= 20)
급성독성 흡입 구분4(분진) (ATEMIX :1.5<= 5)
발암성(carcinogenicity) 구분2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물질(serious eye damage/eye irritation) 구분1
심한 눈 손상/눈 자극성물질(serious eye damage/eye irritation) 구분2A
특정 표적장기 독성물질(1회노출)(specific target organ toxicity single exposure) 구분3 (호흡기 자극)
피부 부식성/자극성물질(skin corrosion/irritation) 구분2
흡인유해성(aspiration harzard) 구분1
수생 환경유해성(hazardous to the aquatic environment) 만성 구분2
급성독성(acute toxicity) 경구 구분5 (ATEMIX :2834.483<= 5000)

나. 예방조치 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그림문자



○ 신호어 : 위험
○ 유해 위험 문구 :
H226 인화성 액체 및 증기
H312 피부와 접촉하면 유해함
H332 흡입하면 유해함
H351 암을 일으킬 것으로 의심됨
H318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킴
H319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H335+H336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H315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H304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H411 장기적 영향에 의해 수생생물에 유독함
H303 삼키면 유해할 수 있음
○ 예방조치 문구
- 예방
P210 열, 고온의 표면, 스파크, 화염 및 그 밖의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시오. 금연
P223 물에 접촉시키지 마시오
P240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지하시오.
P241 방폭형(전기·환기·조명)설비를 사용하시오
P242 스파크가 발생하지 않는 도구를 사용하시오.
P243 정전기 방지 조치를 취하시오.
P280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 착용하시오.
P261 분진·흄·가스·미스트·증기·스프레이의 흡입을 피하시오.
P271 옥외 또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서만 취급하시오.
P201 사용 전 취급 설명서를 확보하시오.
P202 모든 안전 예방조치 문구를 읽고 이해하기 전에는 취급하지 마시오.
P264 취급 후에는 손 및 접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P273 환경으로 배출하지 마시오.
- 대응
P303+P361+P353 피부(또는 머리카락)에 묻으면: 오염된 모든 의류를 즉시 벗으시오. 피부를 물로 씻으시오(또는 샤워하시오.)
P370+P378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하시오(5항 참조).
P302+P352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P312 불편함을 느끼면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21 필요한 처치를 하시오.
P362+P364 오염된 의류는 벗고 다시 사용 전 세척하시오.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08+P313 노출되거나 노출이 우려되면: 의학적인 조치·조언을 구하시오.

P305+P351+P338 눈에 묻으면: 몇 분간 물로 조심해서 씻으시오. 가능하면 콘택트렌즈를 제거하시오. 계속 씻으시오.
P310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P337+P313 눈에 자극이 지속되면: 의학적인 조치 · 조언을 구하시오.
P304+P340 흡입하면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시오.
P332+P313 피부 자극이 나타나면: 의학적인 조언 · 주의를 받으시오.
P301+P310 삼켰다면: 즉시 의료기관(의사)의 도움을 받으시오.
P331 토하게 하지 마시오.
P391 누출물을 모으시오.

- 저장

P403+P235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고 저온으로 유지하시오.
P405 장금장치를 하여 저장하시오.
P403+P233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용기를 단단히 밀폐하시오

- 폐기

P501 폐기물 관련 법령에 따라 내용물 · 용기를 폐기하시오

다. 유해. 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 위험성

NFPA지수 / 물질명	보건	화재	반응성
사이클로헥산온	TWA : 25 ppm, STEL : 50 ppm	자료없음	자료없음
방향족 중질 나프타 용매 (석유)	자료 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1,4-벤젠다이카복실산, 2,2-다이메틸-1,3-프로판디이올 및 1,2-에탄다이올이 함유된 1,3-벤젠다이카복실산 중합체	자료 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멜라민-포름알데하이드 수지(MELAMINE-FORMALDEHYDE RESIN)	자료 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영업비밀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자료 없음
아이소포론	STEL : C 5 ppm	자료없음	자료없음
펜테인이산 다이메틸	자료 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아이소뷰탄올	TWA : 50 ppm	자료없음	자료없음
다이메틸 지방질	자료 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숙신산 다이메틸	자료 없음	자료없음	자료없음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화학물질명	관용명(이명)	CAS번호	함유량(%)
사이클로헥산온	Cyclohexanone	108-94-1	15~25
방향족 중질 나프타 용매 (석유)	Solvent naphtha (petroleum), heavy arom.	64742-94-5	15~25
1,4-벤젠다이카복실산, 2,2-다이메틸-1,3-프로판디이올 및 1,2-에탄다이올이 함유된 1,3-벤젠다이카복실산 중합체	1,3-Benzenedicarboxylic acid polymer with 1,4-benzenedicarboxylic acid, 2,2-dimethyl-1,3-propanediol and 1,2-ethanediol	27923-68-8	13~23
멜라민-포름알데하이드 수지(MELAMINE-FORMALDEHYDE RESIN)	1,3,5-Triazine-2,4,6-triamine-formaldehyde polymer	9003-08-1	11~21
영업비밀	-	-	7~17
아이소포론	Isophorone	78-59-1	5~15
펜테인이산 다이메틸	Pentanedioic acid, dimethyl ester	1119-40-0	6~16
아이소뷰탄올	Isobutanol	78-83-1	2~12
다이메틸 지방질	Hexanedioic acid dimethyl ester	627-93-0	1~10
숙신산 다이메틸	Butanedioic acid dimethyl ester	106-65-0	1~10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때 :
노출된 눈을 많은 양의 깨끗한 흐르는 물로 15분 이상 행구시오.
자극, 통증 부기, 눈물 눈부심등 기타 증상 발생시 즉시 병원에 가서 전문의의 처치를 받을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
오염된 피복을 제거하고 노출된 부위를 비누와 물로 충분히 씻으시오.
자극, 통증등 기타 증상 발생시 전문의에게 노출부위에 대한 진찰을 받으시오.
15분 이상 다량의 비누와 물로 씻어내시오. 즉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시오

다. 흡입했을 때 :
노출원으로부터 피하시고 맑은 공기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시오.
호흡하지 않을 시 인공호흡을 실시하시오.
물질을 흡입하거나 섭취했을 시 흡입호흡법을 실시하지 마시오.
일방판막이 장착된 포켓 마스크나 다른 호흡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인공호흡을 실시 하시오.
호흡이 곤란할 시 산소를 공급하시오.
오염된 피복과 신발을 제거하고 격리시키시오.
즉시 전문의의 진료를 받을 것

라. 먹었을 때 :
구토를 시키시오.
의식이 없는 경우 구토를 시키지 말고, 구토 시는 머리를 엉덩이 아래로 숙여 폐 흡입을 방지할 것.
만약 많은 양을 삼켰다면, 전문의의 처치를 받을 것.
증상에 따라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전문의의로부터 받을 것.
섭취한 물질의 위 세척을 통한 조기 제거는 출혈이나 관통의 전위 합병증에 대한 고려를 해야함.

마. 기타 의사의 주의 사항 :
알려진 해독제는 없으며 적절한 의학적 조치를 취할 것.

5. 폭발 · 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및 부적절한)소화제
○ 적절한 소화제 :
입자상 분말 소화약제, 가스계 소화약제, 일반적인 포말
○ 부적절한 소화제 :
직사 주수를 사용한 소화는 피하시오.
○ 대형 화재 시 :
바람을 등지고 막대한 양의 소화 약제를 안개 형태로 분사하시오.
탱크 등의 폭발 위험 경우 800M 이상 이격할 것.
적절한 보호구를 화재 상황에 따라 사용 할 것.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 열분해생성물 :
이산화탄소, 유독 탄소화합물/질소화합물/황화합물
○ 화재 및 폭발 위험 :
중급 수준의 화재 위험이 있음.

다. 화재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 착용할 보호구 :
방독마스크 또는 공기호흡기, 방열복, 방열모, 방열장갑, 방열 장화
○ 예방조치 :
적응 가능한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시오
화재시 위험 없이 할 수 있다면 용기를 화재지역으로 부터 이동시키시오.
화재 진화 후 상당 시간동안 살수하여 용기를 냉각시키시오.
화재 진압 인원외 인원이 화재 인근으로의 접근을 통제하시오.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및 보호구
○ 착용할 보호구 :
유기용제용 호흡용보호구 및 기타 적절한 보호구/보호의/보호장갑
○ 조치사항 :
위험하지 않은 경우만 누출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것.
발생 증기량을 줄이기 위해 물을 뿌릴 것.
유기가스용 방독마스크 기타 적절한 보호구/보호의/보호장갑을 착용하고 작업할 것.
피부접촉을 피할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 대기 :
살수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키시오
바람을 등지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 토양 :
누출된 물질을 깊은 물웅덩이의 바닥이나 격리수용 가능한 장소 또는 모래주머니를 쌓은 방벽 내로 옮기시오.
흡수제를 사용하여 적합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 수중 :
흡수제를 사용하여 적합한 용기에 수거하시오.
누출된 물질을 기계 장비를 사용하여 수거하시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 소량 누출 시 :
모래 또는 다른 비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흡수시키시오.
누출된 물질의 처분을 위해서 적합한 용기에 옮기시오
○ 다량 누출 시 :
관계인 외 접근을 막고 위험 지역을 격리하며 출입을 금지하시오.
기준량 이상 배출 시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 배출 내용을 통지하시오.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
위험물안전관리법등 관계법에 따라 저장. 취급 할 것
정전기 방전 방지를 위한 접지 등을 실시할 것
유증기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용기등을 밀폐할 것
취급시 국소배기 및 환기장치 등을 이용할 것

나. 안전한 저장 방법(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
수분 증발 및 오염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용기는 완전히 밀폐해서 환기가 좋은 옥내에서 보관할 것.
옥외 보관 시는 직사광선을 피할 것.
보관 적정 온도 : 5~35℃
강산화제, 산과 접촉을 피하시오.
격리된 장소에 따라 아래 보관 적정온도로 저장, 결빙주의, 고온체 주의.

8.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 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1) 사이클로헥산온
○ 국내규정 : 자료없음
○ ACGIH규정 : TWA, 20 ppm (80 mg/m3) STEL, 50 ppm (200 mg/m3) Skin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소변 중 1,2-Cyclohexanediol(with hydrolysis) : 80 mg/L(작업후), 소변 중 Cyclohexanol(with hydrolysis) : 8 mg/L(작업후)

2) 방향족 중질 나프타 용매 (석유)
○ 국내규정 : 자료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3) 1,4-벤젠다이카복실산, 2,2-다이메틸-1,3-프로판디이올 및 1,2-에탄다이올이 함유된 1,3-벤젠다이카복실산 중합체

○ 국내규정 : 자료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4) 멜라민-포름알데하이드 수지(MELAMINE-FORMALDEHYDE RESIN)

○ 국내규정 : 자료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5) 영업비밀

○ 국내규정 : 자료 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6) 아이소포론

○ 국내규정 : 자료없음
○ ACGIH규정 : Ceiling, 5 ppm (28 mg/m3)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7) 펜테인이산 다이메틸

○ 국내규정 : 자료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8) 아이소뷰탄올

○ 국내규정 : 자료없음
○ ACGIH규정 : TWA, 50 ppm (152 mg/m3)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9) 다이메틸 지방질

○ 국내규정 : 자료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10) 숙신산 다이메틸

○ 국내규정 : 자료없음
○ ACGIH규정 : 자료 없음
○ 생물학적 노출기준 : 자료 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
살수하여 증기의 발생을 감소시키시오
바람을 등지고 있도록 하고 저지대를 피할 것.
자료 없음
자료 없음

다. 개인 보호구 :

○ 호흡기 보호 :
호흡용 보호구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검정을 필할 것.
공학적 대책이 불안전하거나 근로자의 이상노출이 예상되는 작업에는 유기용제용 호흡용 보호구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토록 할 것

○ 눈 보호 :
유기용제용 호흡용 보호구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호흡용 보호구를 사용토록 할 것
작업장 가까운 장소에 간이세안기구(식염수) 비치 또는 세안설비를 설치하시오.
미스트 등에 의한 위해가 예상되는 경우 근로자가 보안경을 착용 후 작업하도록 할 것.

○ 손 보호 :
지속적/장기적 노출 시 피부 장애가 예상되므로 고무/PVC제의 불투과성 보호장갑을 착용하도록 할 것.
적합한 내화학성 장갑을 착용하시오.

○ 신체 보호 :
유출이나 엎지름 등의 위해가 있는 경우 불 투과성 고무/PVC제의 보호앞치마를 착용 후작업하고, 필요시 불침투성 전신 보호 복을 착용하도록 할 것.
적합한 내화학성 보호의를 착용하시오.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물리적 상태, 색 등) : 불투명 액체

나. 냄새 : 자극적 용제 냄새

다. 냄새 역치 : 자료없음

라. pH : 자료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 해당없음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 110℃ ~ 230℃

사. 인화점(℃) : 43

아. 증발 속도 : 자료없음

자. 인화성(고체, 기체) : 자료없음

차. 인화 또는 폭발 범위의 상한/하한 : 1.4% / 0.7%

카. 증기압 : 자료없음

타. 용해도 : 18%이하

파. 증기밀도 : 공기보다 큼

하. 비중 : 1.0~1.3

거. N-옥탄올/물 분배계수 : 자료없음

너. 자연발화 온도(℃) : 480℃

더. 분해 온도(℃) : 자료없음

러. 점도 : 90 ~ 120sec(F#4)

머. 분자량 : 자료없음

10. 안정성 및 반응성

가. 화학적 안정성 및 유해 반응의 가능성 :
자료 없음

나. 피해야할 조건(정전기 방전, 충격, 진동 등) :
열, 스파크, 불꽃, 기타 점화원과 접촉을 피하시오.
마찰, 오염을 피하시오

다. 피해야할 물질 :
산화제, 금속, 가연성 물질

라. 분해시 생성되는 유해물질 :
열분해생성물(탄소 등)

11. 독성에 관한 정보

가. 가능성이 높은 노출 경로에 관한 정보
○ 호흡기를 통한 흡입 : 폐이상, 호흡곤란, 저체온, 구토…….
○ 입을 통한 섭취 : 구토, 설사, 위통, 불규칙 심장박동….
○ 피부 접촉 : 자극, 화상, 신경이상….
○ 눈 접촉 : 자극, 눈손상….

나. 건강 유해성 정보

1) 사이클로헥산온

○ 급성 독성
- 경구 : LD50 1890 ㎎/㎏ Rat (ECHA)
- 경피 : LD50 947 mg/kg Rabbit (NITE)
- 흡입 : Vapor LC50 >6.2 ㎎/ℓ 4 hr Rat EU harmonized Cat.4 (ECHA)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토끼를 이용한 피부 부식성/자극성 시험 결과 자극성이 관찰됨 홍반 : 1.7, 부종 : 0.3 (OECD TG, GLP) (ECHA)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시험관 내 계란을 이용한 심한 눈 손상/자극성 시험 결과 높은 자극성이 관찰됨 (ECHA)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maximisation test 시험 결과 분류되지 않음 (ECHA)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 발암성 2
IARC : Group 3
OSHA : 자료 없음
ACGIH : A3
NTP : 자료 없음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In vitro DNA 손상 및 복구, 시험관 내 포유류 세포의 예정되지 않은 DNA 합성 시험 결과 대사활성계 유무에 관계없이 음성 (OECD TG 482), In vivo 포유류 적혈구 소핵 검사 시험 결과 음성 (OECD TG 474, GLP) (ECHA)
○ 생식독성 : 랫드를 대상으로 2세대 생식 독성 연구 결과 치명적인 영향이 관찰되지 않음 (OECD TG 416, GLP) (ECHA)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호흡기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ECHA)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랫드를 이용한 반복경구독성 시험 결과 유해한 영향이 관찰되지 않음. NOAEL 143 mg/kg bw/day (OECD TG 408, GLP) (ECHA), 아만성 반복흡입독성(증기, 90일, 반복 전신흡입노출) NOAEL 100 ppm (rat-간), NOAEL 250 ppm (rat-신장), NOAEL 625ppm 이상 (마우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GLP 독성 시험, 2017)
○ 흡인유해성 : 자료 없음

2) 방향족 중질 나프타 용매 (석유)

○ 급성 독성
- 경구 : LD50 >5000 mg/kg Rat (Read-across 68333-23-3) (OECD TG 420, GLP) (ECHA)
- 경피 : LD50 > 2000 ㎎/㎏ Rabbit (RTECS)
- 흡입 : Vapor >5.28 mg/L 4 hr Rat No death Not classified (Read-across 8008-20-6) (OECD TG 403, GLP) (ECHA)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토끼 시험 결과 자극성임 (Read-across 8008-20-6) (ECHA)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토끼를 대상으로 눈 자극성 시험 결과 비자극성임 (EPA OTS 798.4500, GLP) (ECHA)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피부 과민성 시험 결과 비과민성 (Read-across 68333-23-3) (OECD TG 406, GLP) (ECHA)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IARC : 자료 없음
OSHA : 자료 없음
ACGIH : 자료 없음
NTP : 자료 없음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in vitro, in vivo 변이원성 시험결과 음성 (IUCLID)

○ 생식독성 : 랫드를 대상으로 1세대 생식독성 연구 결과 전반적인 생식 독성이 관찰되지 않음 (Read-across 8008-20-6) (OECD TG 415, GLP) (ECHA)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졸음 또는 현기증을 일으킬 수 있음 (ECHA)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랫드를 대상으로 반복경구투여 시험 결과 치명적인 영향이 관찰되지 않음. NOAEL 750 mg/kg bw/day (OECD TG 408, GLP) (ECHA)
○ 흡인유해성 : 삼켜서 기도로 유입되면 치명적일 수 있음. (EU Harmonized Cat. 1) (ECHA)

3) 1,4-벤젠다이카복실산, 2,2-다이메틸-1,3-프로판디이올 및 1,2-에탄다이올이 함유된 1,3-벤젠다이카복실산 중합체

○ 급성 독성
- 경구 : 자료 없음
- 경피 : 자료 없음
- 흡입 : 자료 없음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자료 없음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IARC : 자료 없음
OSHA : 자료 없음
ACGIH : 자료 없음
NTP : 자료 없음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료 없음
○ 생식독성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자료 없음
○ 흡인유해성 : 자료 없음

4) 멜라민-포름알데하이드 수지(MELAMINE-FORMALDEHYDE RESIN)

○ 급성 독성
- 경구 : LD50 > 10000 mg/kg Rat
- 경피 : LD50 > 10000 mg/kg Rabbit
- 흡입 : 자료 없음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자료 없음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IARC : 자료 없음
OSHA : 자료 없음
ACGIH : 자료 없음
NTP : 자료 없음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료 없음
○ 생식독성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자료 없음
○ 흡인유해성 : 자료 없음

5) 영업비밀

○ 급성 독성
- 경구 : 자료 없음
- 경피 : 자료 없음
- 흡입 : 자료 없음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자료 없음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IARC : 자료 없음
OSHA : 자료 없음
ACGIH : 자료 없음
NTP : 자료 없음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료 없음
○ 생식독성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자료 없음
○ 흡인유해성 : 자료 없음

6) 아이소포론

○ 급성 독성
- 경구 : LD50 = 1500 mg/kg Rat (ECHA, HSDB)
- 경피 : LD50 = 1265 mg/kg rabbit, LD50 1200 mg/kg Guinea pig (ECHA)
- 흡입 : Aerosol LC50 = 7 mg/ℓ 4 hr Rat (ECHA)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토끼를 이용한 피부부식성/자극성 시험결과 자극성이 발견되지 않음. (OECD Guideline 404)

(ECHA)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토끼를 이용한 심한눈손상/ 자극성 시험결과 보통의 자극성이 관찰됨. (총자극지수:26, 각막지수: 0.9, 홍재지수: 0.07, 결막지수: 2.06 결막부종지수: 1.06)(ECHA)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기니피그(암)을 이용한 피부과민성 시험결과 과민성이 발견되지 않음. (OECD Guideline 406)(ECHA)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 발암성 2
IARC : 자료 없음
OSHA : 자료 없음
ACGIH : A3
NTP : 자료 없음
EU CLP : Carc.2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시험관 내 포유류 유전자돌연변이시험 결과 대사활성계 없이 양성. (OECD TG 476) 시험관 내 포유류 간세포를 이용한 부정기 DNA합성 (UDS)시험 결과 대사활성계 없이 음성. 생체 내 포유류 저결구를 이용한 소핵시험결과 음성. (OECD TG 474)(ECHA)
○ 생식독성 : 랫드(암/수)를 이용한 생식독성 시험결과 눈과 코에 자극, 폐에서 출혈의 흔적, 임신율과 태아에 별 영향보이지 않음. (NOAEL< 2 873 mg/m³ air) 마우스를 이용한 발달독성/최기형성 시험결과 체중감소, 탈모, 태아에대한 부작용은 관찰되지 않음. (NOAEL maternal toxicity =289 mg/m³ air, NOAEL teratogenicity>= 664 mg/m³ air)(ECHA)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급성 경피독성시험결과 탈진, 혼수상태, 가빠진 호흡, 피부에 홍반, 급성 경구독성시험결과 위와장에 분비물 증가, 불규칙한 호흡, 간출혈, 폐기종, 부종이나 출혈, 비장확대 급성 흡입독성시험결과 결막에 자극, 호흡곤란, 급성폐부종, 졸음(우울)증상 급성으로 기 분류되어 있으므로 본 항목에서 분류에 적용하지 않음 (ECHA)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랫드(암/수)를 이용한 만성 경구독성시험(90일)결과 체중증가량이 감소 외 다른 영향은 보이지 않음. NOAEL male = 102.5 mg/kg bw/day, NOAEL female>= 311.8 mg/kg bw/day랫드(암/수)를 이용한 만성 흡입독성시험(18개월)결과 눈과 코에 자극, 폐 출혈, 폐포 부종, NOAEC< 1 436 mg/m³ air (ECHA)
○ 흡인유해성 : 자료 없음

7) 펜테인이산 다이메틸
○ 급성 독성
- 경구 : LD50 = 1920 ㎎/㎏ Rat (IUCLID)
- 경피 : LD50 = 8500 ㎎/㎏ Rat (IUCLID)
- 흡입 : 자료 없음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래빗 경 자극 (IUCLID)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래빗 자극 (mild to moderate) (GLP)(HPVIS)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자료 없음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IARC : 자료 없음
OSHA : 자료 없음
ACGIH : 자료 없음
NTP : 자료 없음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In vivo : Bone Marrow Chromosomal Aberration(Micronucleus assay, Rat inhalation) - 음성(GLP) (HPVIS)
○ 생식독성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자료 없음
○ 흡인유해성 : 자료 없음

8) 아이소뷰탄올
○ 급성 독성
- 경구 : LD50 3350 ㎎/㎏ Rat (OECD Guideline 401, EPA OTS 798.1175, GLP)(ECHA)
- 경피 : LD50 >2000 ㎎/㎏ Rabbit (LD50= 2460mg/kg bw, No death, OECD Guideline 402, EPA OTS 798.1100, GLP)
- 흡입 : Vapor LC50 24.6 ㎎/ℓ Rat (ECHA)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토끼를 대상으로 피부 자극성/부식성 실험 결과, 비가역적 자극성 (OECD Guideline 404, EPA OTS 798.4470, GLP)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토끼를 대상으로 눈 자극성시험 결과, 심각한 안구자극. 비가역적 (EPA OTS 798.4500, OECD Guideline 405, GLP)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기니피그를 대상으로 피부과민성 시험 결과 민감성을 나타내지 않음 (OECD Guideline 406 (Skin Sensitisation))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IARC : 자료 없음
OSHA : 자료 없음
ACGIH : 자료 없음
NTP : 자료 없음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마우스(암/수)를 대상으로 생체내 포유류 적혈구 소핵 시험 결과, 음성(OECD Guideline 474,GLP)
○ 생식독성 : 랫드(암컷)의 발달독성 시험 결과 아무런 영향이 없음, NOAEL : 10 mg/L air (OECD Guideline 414 (Prenatal Developmental Toxicity Study),GLP)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6 시간 노출 중 중. 고 선량에서 마취, 호흡 곤란, 구토 및 눈물 흘림 (CMA (1994)), 랫드 6000 및 3000 ppm으로 노출의 6 시간 중 중추 신경계의 일반화 우울증의 명백한 증거, OECD TG 403과 유사한 GLP 적합 흡입 유해성 시험에서, 5 마리의 수컷 쥐와 5 마리의 암컷 쥐의 그룹을 정적 조건 (UCC 1993) 하에서 6 시간 동안 공기 중 이소부탄올 (99.9 % 순도)의 포화 증기 6000ppm에 노출 후 7 일과 14 일 후 모든 쥐에게서 노출 동안, 동물은 활동저하, 눈물, 마취, 피로감, 비정상적인 호흡 (짧고 얕은 호흡)과 눈 주위의 모피의 젖음을 보였다. 발작, 마취 및 부정적인 반사(표면 정위 및 발가락 및 꼬리 핀치)는 노출 후 관찰 (ECHA)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랫드(암/수)를 대상으로 90일 간 반복노출 경구독성 시험 결과 시험 결과 명백한 효과 없음, NOAEL > 1450 mg/kg bw/day (OECD TG 408,GLP)
○ 흡인유해성 : 점도 4 mPa s (dynamic) 20 ° C, 분자구조 C4H10O (KOSHA)

9) 다이메틸 지방질

○ 급성 독성
- 경구 : LD50 = 1920 ㎎/㎏ Rat (IUCLID)
- 경피 : 자료 없음
- 흡입 : 자료 없음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자료 없음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자료 없음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IARC : 자료 없음
OSHA : 자료 없음
ACGIH : 자료 없음
NTP : 자료 없음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자료 없음
○ 생식독성 : 수태한 지 5-15일된 암컷 래트에362 ㎎/㎏의 용량을 복막내로 투여시 근골격계이상과 다른발달 이상이 생긴다. 용량만 달리해 181 ㎎/㎏을 투여시 착상전 사망률에 영향을 받는다. (Thomson Micromedex)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자료 없음
○ 흡인유해성 : 자료 없음

10) 숙신산 다이메틸

○ 급성 독성
- 경구 : LD50 > 5000 ㎎/㎏ Rat (IUCLID,NLM,THOMSON)
- 경피 : LD50 > 5000 ㎎/㎏ Rabbit (IUCLID,NLM,THOMSON)
- 흡입 : 자료 없음

○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 rabbit / 무 자극. (IUCLID)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래빗 / 자극 (IUCLID)
○ 호흡기 과민성 : 자료 없음
○ 피부 과민성 : 자료 없음
○ 발암성
산업안전보건법 : 자료 없음
고용노동부고시 : 자료 없음
IARC : 자료 없음
OSHA : 자료 없음
ACGIH : 자료 없음
NTP : 자료 없음
EU CLP : 자료 없음
○ 생식세포 변이원성 : 인비보/마우스/음성 (IUCLID)
○ 생식독성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1회 노출) : 자료 없음
○ 특정표적장기독성(반복 노출) : 자료 없음
○ 흡인유해성 : 자료 없음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1) 사이클로헥산온

○ 어류 : LC50 527 ~ 732 ㎎/ℓ 96 hr Pimephales promelas (ECHA)
○ 갑각류 : EC50 >100 mg/L 48 hr Daphnia magna (ECHA)
○ 조류 : NOEC >= 100 ㎎/ℓ 72 hr, EC50 >100 mg/L 72 hr Desmodesmus subspicatus (ECHA)

2) 방향족 중질 나프타 용매 (석유)

○ 어류 : LL50 2 ~ 5 mg/L 96 hr Oncorhynchus mykiss (OECD TG 203, GLP) (ECHA)
○ 갑각류 : EC50 0.95 ㎎/ℓ 48 hr Daphnia magna (IUCLID)
○ 조류 : EL50 1~3 mg/L 72 hr Raphidocelis subcapitata (OECD TG 201, GLP) (ECHA)

3) 1,4-벤젠다이카복실산, 2,2-다이메틸-1,3-프로판디이올 및 1,2-에탄다이올이 함유된 1,3-벤젠다이카복실산 중합체

○ 어류 : 자료 없음
○ 갑각류 : 자료 없음
○ 조류 : 자료 없음

4) 멜라민-포름알데하이드 수지(MELAMINE-FORMALDEHYDE RESIN)

○ 어류 : 자료 없음
○ 갑각류 : LC50 10.9 ㎎/ℓ 96 hr Daphnia magna (ECOTOX)
○ 조류 : 자료 없음

5) 영업비밀

○ 어류 : 자료 없음
○ 갑각류 : 자료 없음
○ 조류 : 자료 없음

6) 아이소포론

○ 어류 : LC50 140 ㎎/ℓ 96 hr LC50 228 ㎎/ℓ 96 hr Pimephales promelas (ECHA)
○ 갑각류 : LC50 12.9 ㎎/ℓ 96 hr Mysid shrimp (NITE: SIDS, 2005) LC50 120 ㎎/ℓ 48 hr Daphnia magna (ECHA)
○ 조류 : EbC50 475 ㎎/ℓ 72 hr Scenedesmus subspicatus (ECHA)

7) 펜테인이산 다이메틸

○ 어류 : LC50 13400 ㎎/ℓ 96 hr Oncorhynchus mykiss (ECOTOX)

○ 갑각류 : EC50 3940 ~ 4670 ㎎/ℓ 48 hr Daphnia magna (ECOTOX)
○ 조류 : 자료 없음

8) 아이소뷰탄올
○ 어류 : LC50 1000 ㎎/ℓ 96 hr LC50 1430 ㎎/ℓ 96 hr Pimephales promelas (ECHA)
○ 갑각류 : EC50 1250 ㎎/ℓ 24 hr Daphnia magna (NITE: EHC65, 1987) EC50 1100 ㎎/ℓ 48 hr Daphnia magna (ECHA)
○ 조류 : EC50 593 ㎎/ℓ 72 hr Selenastrum capricornutum (ECHA)

9) 다이메틸 지방질
○ 어류 : LC50 = 87.095 ㎎/ℓ 96 hr (Estimate)
○ 갑각류 : 자료 없음
○ 조류 : EC50 = 6.691 ㎎/ℓ 96 hr (No accurate information on Species) (Estimate)

10) 숙신산 다이메틸
○ 어류 : LC50 50 ~ 100 ㎎/ℓ 96 hr Brachydanio rerio (OECD TG 203, GLP, IUCLID)
○ 갑각류 : LC50 3317.276 ㎎/ℓ 48 hr (Estimate)
○ 조류 : EC50 11.917 ㎎/ℓ 96 hr (Estimate)

나. 잔류성 및 분해성
1) 사이클로헥산온
○ 잔류성 : log Pow 0.86 (OECD Guideline 107) (ECHA)
○ 분해성 : 자료 없음

2) 방향족 중질 나프타 용매 (석유)
○ 잔류성 : log Kow 2.9 ~ 6.1 (IUCLID)
○ 분해성 : 자료 없음

3) 1,4-벤젠다이카복실산, 2,2-다이메틸-1,3-프로판디이올 및 1,2-에탄다이올이 함유된 1,3-벤젠다이카복실산 중합체
○ 잔류성 : 자료 없음
○ 분해성 : 자료 없음

4) 멜라민-포름알데하이드 수지(MELAMINE-FORMALDEHYDE RESIN)
○ 잔류성 : 자료 없음
○ 분해성 : 자료 없음

5) 영업비밀
○ 잔류성 : 자료 없음
○ 분해성 : 자료 없음

6) 아이소포론
○ 잔류성 : log Kow 1.67 (ECHA)
○ 분해성 : 자료 없음

7) 펜테인이산 다이메틸
○ 잔류성 : log Kow = 0.62
○ 분해성 : 자료 없음

8) 아이소뷰탄올
○ 잔류성 : log Kow 0.8 (ISCS) log Kow 10 (ECHA)
○ 분해성 : 자료 없음

9) 다이메틸 지방질
○ 잔류성 : log Kow = 1.03 (NLM/HSDB)
○ 분해성 : 자료 없음

10) 숙신산 다이메틸
○ 잔류성 : log Kow 0.35
○ 분해성 : 자료 없음

다. 생물농축성
1) 사이클로헥산온
○ 농축성 : 1.37 ~ 9.23 (Average: 4.26, median: 3.16) (EPA Comptox)
○ 생분해성 : 90~100 % 28 d (OECD Guideline 301 F) (ECHA)

2) 방향족 중질 나프타 용매 (석유)
○ 농축성 : BCF 130 ~ 159 (IUCLID)
○ 생분해성 : 39 % 28 d (Aerobic, Activated Sludge, Domestic wastewater, Not readily biodegradable) (IUCLID)

3) 1,4-벤젠다이카복실산, 2,2-다이메틸-1,3-프로판디이올 및 1,2-에탄다이올이 함유된 1,3-벤젠다이카복실산 중합체
○ 농축성 : 자료 없음
○ 생분해성 : 자료 없음

4) 멜라민-포름알데하이드 수지(MELAMINE-FORMALDEHYDE RESIN)
○ 농축성 : 자료 없음
○ 생분해성 : 자료 없음

5) 영업비밀
○ 농축성 : 자료 없음
○ 생분해성 : 자료 없음

6) 아이소포론
○ 농축성 : BCF 1.8 (NITE: Existing Chemicals Safety Check Data) BCF 7 (HSDB)
○ 생분해성 : Biodegradability = 95 (%) 28 day (readily biodegradable) (SIDS)

7) 펜테인이산 다이메틸
○ 농축성 : 자료 없음
○ 생분해성 : 98 (%) 28 day (OECD TG 301C, IUCLID)

8) 아이소뷰탄올
○ 농축성 : 자료 없음
○ 생분해성 : 70%~80% 28day (ECHA)

9) 다이메틸 지방질
○ 농축성 : BCF 1.2 (estimated by log Kow 1.03) (NLM/HSDB))
○ 생분해성 : 자료 없음

10) 숙신산 다이메틸
○ 농축성 : BCF 1.1 (HSDB)
○ 생분해성 : More than 95% decomposed after 3 days (IUCLID)

라. 토양이동성
1) 사이클로헥산온
자료 없음

2) 방향족 중질 나프타 용매 (석유)
자료 없음

3) 1,4-벤젠다이카복실산, 2,2-다이메틸-1,3-프로판디이올 및 1,2-에탄다이올이 함유된 1,3-벤젠다이카복실산 중합체
자료 없음

4) 멜라민-포름알데하이드 수지(MELAMINE-FORMALDEHYDE RESIN)
자료 없음

5) 영업비밀
자료 없음

6) 아이소포론
자료 없음

7) 펜테인이산 다이메틸
자료 없음

8) 아이소뷰탄올
log Kow = 0.8 (1)

9) 다이메틸 지방질
Koc 10.9 (estimate)

10) 숙신산 다이메틸
자료 없음

마. 기타 유해 영향
1) 사이클로헥산온
자료 없음

2) 방향족 중질 나프타 용매 (석유)
자료 없음

3) 1,4-벤젠다이카복실산, 2,2-다이메틸-1,3-프로판디이올 및 1,2-에탄다이올이 함유된 1,3-벤젠다이카복실산 중합체
자료 없음

4) 멜라민-포름알데하이드 수지(MELAMINE-FORMALDEHYDE RESIN)
자료 없음

5) 영업비밀
자료 없음

6) 아이소포론
Fish(Pimephales promelas); NOEC(32d) 4.2~15.6 mg/L (Flow-Through Early Life Stage Test, US EPA proposal)
Algae(Champia parvula, marine red macroalgae); NOEC(14d) 29.9 mg/L (ECHA)

7) 펜테인이산 다이메틸
자료 없음

8) 아이소뷰탄올
Crustaceans(Daphnia magna); NOEC(21d) 20mg/L Algae(Pseudokirchnerella subcapitata); NOEC(72h)>53mg/L (OECD Guideline 201, Alga, Growth Inhibition Test,GLP) (ECHA)

9) 다이메틸 지방질
자료 없음

10) 숙신산 다이메틸
자료 없음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
- 폐기물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위탁처리 할 것.

나. 폐기시 주의사항(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
- 무단 처분이나 소각은 자연생태계에 유해하므로 이를 금할 것.
적용 규정에 따라 폐기할 것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가. 유엔번호(IMDG CODE/IATA DGR) : 1263

나. 유엔 적정 선적명 : 페인트 (페인트, 래커, 에나멜, 착색제, 셸락용액, 바니시, 광택제, 액체 충전물 및 액체 래커 전색제 포함) 또는 페인트 관련 물질 (페인트 희석제 또는 환원제 포함)

다. 운송에서의 위험성 등급 : 3

라. 용기등급(IMDG CODE/IATA DGR) : III

마. 해양오염물질(해당 또는 비해당으로 표기) : 해당

바. 사용자가 운송 또는 운송 수단에 관련해 알 필요가 있거나 필요한 특별한 안전 대책
지역 운송 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름
DOT 및 기타 규정에 맞게 포장 및 운송
○ 화재시 비상조치의 종류 : F-E
○ 유출시 비상조치의 종류 : S-E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 "노출기준설정물질", "관리대상유해물질",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발암성물질", "공정안전보고서제출대상물질"

1) 사이클로헥산온

제조금지물질 : 해당 없음
제조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1% 이상 일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1% 이상 일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1% 이상 일때
노출기준설정물질 : 시클로헥사논TWA : 25 ppm, STEL : 50 ppm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됨
특별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대상물질 : 해당됨

2) 방향족 중질 나프타 용매 (석유)

제조금지물질 : 해당 없음
제조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해당 없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 없음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 없음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대상물질 : 해당없음

3) 1,4-벤젠다이카복실산, 2,2-다이메틸-1,3-프로판디이올 및 1,2-에탄다이올이 함유된 1,3-벤젠다이카복실산 중합체

제조금지물질 : 해당 없음
제조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해당 없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 없음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 없음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대상물질 : 해당없음

4) 멜라민-포름알데하이드 수지(MELAMINE-FORMALDEHYDE RESIN)

제조금지물질 : 해당 없음
제조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해당 없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 없음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 없음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대상물질 : 해당없음

5) 영업비밀

제조금지물질 : 해당 없음
제조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해당 없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 없음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 없음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 없음
특별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대상물질 : 해당 없음

6) 아이소포론

제조금지물질 : 해당 없음
제조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해당 없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 없음
노출기준설정물질 : 이소포론STEL : C 5 ppm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대상물질 : 해당없음

7) 펜테인이산 다이메틸

제조금지물질 : 해당 없음
제조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해당 없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 없음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 없음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대상물질 : 해당없음

8) 아이소뷰탄올

제조금지물질 : 해당 없음
제조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1% 이상 일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1% 이상 일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1% 이상 일때
노출기준설정물질 : 이소부틸 알콜TWA : 50 ppm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대상물질 : 해당됨

9) 다이메틸 지방질

제조금지물질 : 해당 없음
제조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해당 없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 없음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 없음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대상물질 : 해당없음

10) 숙신산 다이메틸

제조금지물질 : 해당 없음
제조허가물질 : 해당 없음
관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작업환경측정대상물질 : 해당 없음
특수건강검진대상물질 : 해당 없음
노출기준설정물질 : 해당 없음
허용기준설정물질 : 해당없음
특별관리대상유해물질 : 해당없음
공정안전보고서(PSM)제출대상물질 : 해당없음

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규제 : 해당 없음

1) 사이클로헥산온

기존물질 : 해당됨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취급제한 : 해당 없음
금지물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2) 방향족 중질 나프타 용매 (석유)

기존물질 : 해당됨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취급제한 : 해당 없음
금지물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3) 1,4-벤젠다이카복실산, 2,2-다이메틸-1,3-프로판디이올 및 1,2-에탄다이올이 함유된 1,3-벤젠다이카복실산 중합체

기존물질 : 해당됨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취급제한 : 해당 없음
금지물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4) 멜라민-포름알데하이드 수지(MELAMINE-FORMALDEHYDE RESIN)

기존물질 : 해당됨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취급제한 : 해당 없음
금지물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5) 영업비밀
기존물질 : 해당 없음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취급제한 : 해당 없음
금지물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6) 아이소포론
기존물질 : 해당됨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취급제한 : 해당 없음
금지물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7) 펜테인이산 다이메틸
기존물질 : 해당됨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취급제한 : 해당 없음
금지물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8) 아이소뷰탄올
기존물질 : 해당됨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취급제한 : 해당 없음
금지물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9) 다이메틸 지방질
기존물질 : 해당됨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취급제한 : 해당 없음
금지물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10) 숙신산 다이메틸
기존물질 : 해당됨
신규물질로서 등록된 물질 : 해당 없음
유독물 : 해당 없음
취급제한 : 해당 없음
금지물질 : 해당 없음
배출량조사대상물질 : 해당 없음
사고대비물질 : 해당 없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 제4류 제2석유류
1) 사이클로헥산온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2) 방향족 중질 나프타 용매 (석유)
해당 없음

3) 1,4-벤젠다이카복실산, 2,2-다이메틸-1,3-프로판디이올 및 1,2-에탄다이올이 함유된 1,3-벤젠다이카복실산 중합체
해당 없음

4) 멜라민-포름알데하이드 수지(MELAMINE-FORMALDEHYDE RESIN)
해당 없음

5) 영업비밀
해당 없음

6) 아이소포론
제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

7) 펜테인이산 다이메틸
제4류 제3석유류(비수용성)

8) 아이소뷰탄올
제4류 제2석유류(비수용성)

9) 다이메틸 지방질
해당 없음

10) 숙신산 다이메틸
해당 없음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을 준수할 것.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1) 사이클로헥산온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2267.995 kg 5000 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2) 방향족 중질 나프타 용매 (석유)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3) 1,4-벤젠다이카복실산, 2,2-다이메틸-1,3-프로판디이올 및 1,2-에탄다이올이 함유된 1,3-벤젠다이카복실산 중합체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4) 멜라민-포름알데하이드 수지(MELAMINE-FORMALDEHYDE RESIN)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5) 영업비밀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 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6) 아이소포론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2267.995 kg 5000 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7) 펜테인이산 다이메틸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8) 아이소뷰탄올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2267.995 kg 5000 lb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9) 다이메틸 지방질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10) 숙신산 다이메틸
국내(잔류성 유기 오염물질관리법) :
해당없음
국외규제 :
미국관리정보(OSH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CERCLA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2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04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EPCRA 313 규정)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로테르담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스톡홀름협약물질) : 해당 없음
미국관리정보(몬트리올의정서물질)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확정분류결과)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위험문구) : 해당 없음
EU 분류정보(안전문구) : 해당 없음

16. 기타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 ACGIH; https://www.acgih.org/
- IARC; http://monographs.iarc.fr/ENG/Classification/latest_classif.php
- Corporate Solution From Thomson Micromedex(http://csi.micromedex.com)
- NTP; http://ntp.niehs.nih.gov/index.cfm
- OSHA; https://www.osha.gov/laws-regs/regulations/standardnumber/1910/1910.119AppA
- NCIS; http://ncis.nier.go.kr/
- ECHA; https://echa.europa.eu/information-on-chemicals/registered-substances
- HSDB; https://pubchem.ncbi.nlm.nih.gov/
- EPA; https://pubchem.ncbi.nlm.nih.gov/
- SIDS; https://hpvchemicals.oecd.org/ui/Search.aspx
- 화학물질정보시스템, 국립환경과학원(http://ncis.nier.go.kr)
- ECOTOX Database, EPA(http://cfpub.epa.gov/ecotox)
- International Chemical Safety Cards(ICSC)(http://www.nihs.go.jp/ICSC)
- 위험물정보관리시스템, 소방방재청(http://hazmat.nema.go.kr)

○ 기타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과 관련된 정보

-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 고시의 양식에 부합하게 관련 영문 MSDS 등을 참고하여 번역·편집한 후, 국내 관련 규제·법규·현황 등을 추가하였음.
- 국내 관련 규제법규 현황은 본 제품의 용도나 알려진 성분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완전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새로운 법령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하여 수시로 바뀔 수 있음.
- 본 MSDS는 현재의 알려진 지식 경험 및 관련자료에 근거하여 정확히 작성된 것이나 제품자체를 완전히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 알려지지 않은 위험성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서 사용할 것.

① 본 MSDS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고용노동부 고시(제2020-130호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및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으며, 취급사원에 대한 교육용 및 공급자에게 기술자료로서 제공함.

② 공급자가 본 MSDS 자료외의 추가적인 자료는 UP-DATE하여 사용하기 바람.

나. 최초 작성일 : 2021-11-11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 일자 : 5회(2023-04-18)

라. 기타 : MSDS 게시 정보 " WWW.NOROOPAINT.COM"